의안번호	2218752
의 뢰 인	신정훈의원
회 답 일	2026.07.22.
추계번호	26C2485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6항 내지 제8항 신설 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)	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거나 용역계약, 운송계약, 시설이용계약, 체험 프로그램 운영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교육활동의 운영에 참여하려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전인증의 기준, 절차, 유효기간, 사후점검, 인증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제6항).	의무규정
		학교장은 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외부기관 또는 업체에 한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(제7항).	
		제7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학교장,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해당 외부기관 또는 업체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, 장비, 교통수단, 숙박시설, 체험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위탁 용역 수행 영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・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(제8항).	

Ⅱ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6항 내지 제8항 신설 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은 ①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위탁기관 및 업체의 안전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, ②학교장은 교육활동 시 해당 인증기관에 한하여 계약하도록 하며, ③이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, 교직원 및 보조인력의 민·형사상 책임을 면제함

○ 개정안 시행 시 교육활동 위탁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및 교직원 등의 책임 면제 범위 확대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부담 증가 및 공제료 인상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행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[1]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·도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,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음
- 현재 학교안전공제의 보상·배상한도를 초과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나, 개정안 시행으로 교직원 등의 책임 면제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

  * [참고자료] 학교안전공제 사업 보상 범위 및 한도

❑ 그러나 인증 대상 업체의 규모, 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이 불확정적이고, 향후 책임 면제로 발생할 재정부담 증가분 및 손실보전 방식 등의 추정을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❑ 이에 개정안은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---

1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제11조(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)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(이하 "학교안전공제"라 한다) 사업을 실시한다. 다만,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.
②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. 다만,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문지은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학교안전공제 사업 보상 범위 및 한도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2">학교배상책임공제</th><th colspan="2">학교안전공제</th></tr>
<tr><td>사업 근거</td><td colspan="2">학교안전법 제29조제1항제6호</td><td colspan="2">학교안전법 제11조제1항</td></tr>
<tr><td>사업 주체</td><td colspan="2">학교안전공제중앙회</td><td colspan="2">시·도학교안전공제회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보상 범위</td><td>제3자가 인적·물적 피해</td><td>○ 인적 손해: 사고당 20억원
※ 1인당 부상 3천만원, 사망·장해 1억5천만원
○ 물적 손해: 사고당 1억원</td><td>요양급여</td><td>○ 급여 전액 및 비급여 일부 항목
○ 간병료: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
○ 간병 부대경비: 1일당 2만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학생 휴대품의 분실·파손</td><td rowspan="2">○ 휴대폰 파손/분실: 1대당 200만원
※ 1학교당 연 2천만원</td><td>장해급여</td><td>○ 일실수익 및 위자료</td></tr>
<tr><td>간병급여</td><td>○ 상시: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
○ 수시: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2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학교장 대상 과태료</td><td rowspan="3">○ 급식 과태료: 사고당 500만원</td><td>유족급여</td><td>○ 일실수익 및 위자료</td></tr>
<tr><td>장의비</td><td>○ 평균임금의 100일분</td></tr>
<tr><td>기타(위로금)</td><td>○ 4,000만원</td></tr>
<tr><td>공제료</td><td colspan="2">학생 1인당 350원</td><td colspan="2">시·도별로 책정</td></tr>
</table>

자료: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·도학교안전공제회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